

	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칙	규정번호	6-2-4	
		제정일자	2014.08.14	
		개정일자		
		개정번호	Ver.0	총페이지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의 특성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운영계획수립, 심의 및 조정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추진전략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사업 소요예산의 책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사업의 신청, 운영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
4.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등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사업단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회의는 사업단장이 소집한다.

②사업단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사업단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관계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.

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사업단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간사) 사업단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운영경비)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의안과 관련된 특성화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.

제7조(수당과 여비) 대학교 소속 교직원이 아닌 전문위원에게는 특성화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- (1) **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**(경과조치)**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은 본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